

영유아보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영아별로 지원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 가구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 100%+소득이 적은 쪽 50%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자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모·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구매가능 유통점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e마켓, 이마트, 나들가게 등(구매가능점 확인필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60일 이후 신청 시 잔여기간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같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tel.880-5473, 5458